

[별표 4]

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, 심사절차와 방법(제6조제1항 관련)

1. 현장심사

- 가.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은 별표 3에 따른 제출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 공시심사원은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.
- 나. 공시기관은 별표1 제1호가목의 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,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시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시료와 동일한 시료 또는 원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.
- 다. 공시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.

2. 제품심사

- 가.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시 제출한 시료와 제1호다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가목의 시료에 대하여 주성분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다. 가목의 시료는 제품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3. 서류심사

- 가. 공시기관은 제출된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- 나.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.
 - 1) 제조조성비에 관한 자료
 - 2) 주성분 및 함량에 관한 자료
 - 3)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작물,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
 - 4)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독성시험 일부·전부 생략시 관련 증빙서류

다.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나목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부터 독성시험성적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성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시기관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.

라. 공시심사원은 서류심사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 계획서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하여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

4. 종합심사

가.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사후관리 시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나.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